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조남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8
----------	-------

발의년월일 : 2014. 2. 19.

발 의 자 :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레(9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근거

- 가.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제6조, 제9조, 제53조, 제54조 등
-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8호, 2011.10.5 시행) 제3조

4. 조 례 안 : 불임

5. 예산조치 : 필요

가. 소요예산 : 189,063천원

나. 산출기준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비 : 30,000천원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 13,200천원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임대보증금 : 100,000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비 : 45,863천원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입법예고 : 2014. 2. 20 ~ 2. 25(제출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불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기준)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활동지원급여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조(사업의 평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타법개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5] [법률 제10518호, 2011.3.30,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31] [보건복지부령 제218호, 2013.10.31, 일부개정]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